하남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 남 시 의 회

하남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596

발의연월일 : 2023년 1월 20일
발 의 자 : 최 훈 종 의원

1. 제안 이유

2021년 하남시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보안등 관리에 관한 사무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로관리과로 이관되어 보안등 설치 및 관리 등의 주체를 관할 동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안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조문 내 용어 정의 수정 및 신설(제2조)
나. 보안등 사무에 관한 설치 및 관리 등의 주체를 관할 동장에서 시장으로 정정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. 27. ~ 2. 2.
나. 의견 내용 : 의견 있음

6. 부서협의 결과(도로관리과)

○ 본 일부개정 조례는 '공원등'의 내용을 신설하여 '조명시설' 관리 주체를 시장으로 일원화 하였음. 따라서 조례명도 '하남시 가로등 및 보안등,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'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.

⇒ **집행부 의견 반영**

하남시조례 제 호

하남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법률안

하남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하남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”를 “**하남시 가로등·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**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가로등 및 보안등”을 “가로등, 보안등 및 공원등”으로, “필요한 사항”을 “필요한 사항”으로, “목적으로 한다”를 “목적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6미터”를 “12미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공원등”이란 공원 및 녹지에 야간이용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.
4. “조명시설”이란 가로등, 보안등 및 공원등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가로등”을 “조명시설”로, “설치하고 보안등은 관할 동장이 설치한다”를 “설치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관할 동장”을 각각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가로등은 시장이 관리하고 보안등은 관할 동장”을 “조명시설은 시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시장과 관할 동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시장이나 관할 동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“시장이나 관할 동장”을 각각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시장이나 관할 동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하남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	하남시 가로등·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남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가로등, 보안등 및 공원등------ 필요한 사항---------- ----------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가로등”이란 도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. 2. (생 략) 3. “조명시설”이란 가로등 및 보안등을 말한다. <신 설>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 ---------- 12미터 ----------. 2. (현행과 같음) 3. “공원등”이란 공원 및 녹지에 야간이용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. 4. “조명시설”이란 가로등, 보안등 및 공원등을 말한다.
제3조(설치 등) ① 가로등은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하고 보안등은 관할 동장이 설치한다.	제3조(설치 등) ① 조명시설---- ---------- 설치한다.
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신청절차) ① 보안등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통장의 의견을 받아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.	제6조(신청절차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시장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.
② 관할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.	② 시장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.
제8조(관리자 지정) 가로등은 시장이 관리하고 보안등은 관할 동장이 관리 한다.	제8조(관리자 지정) 조명시설은 시장---------- ----------.
제9조(관리대장 및 표찰) ① 시장과 관할 동장은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	제9조(관리대장 및 표찰) ① 시장 ---------- ---------- --. ----------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이설)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	제11조(이설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이나 관할 동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.	----------시장--------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위반행위에 대한 조치) 시장이나 관할 동장은 조명시설 관련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	제13조(위반행위에 대한 조치) 시장----------.
1. 시장이나 관할 동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	1. 시장--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14조(고장신고 처리) 시장이나 관할 동장은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명시설 고장신고 접수처리부에 기록한 후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	제14조(고장신고 처리) 시장----------.

[별지 제1호 서식]

보안등 설치 신청서(제6조제1항 관련)

설치위치(주소)	
조명시설 수혜가구 및 주민수	
설치 필요성	
통장 의견	
비고	

※ 첨부 : 설치지점 약도 1부

위와 같이 보안등 설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주소 :

성 명 : (인)

하남시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조명시설 이설 신청서(제11조 1항 관련)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신청인</td><td>성 명
(명 칭)</td><td></td><td>전화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신 청
대 상</td><td>신청위치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신 청 량</td><td>이설 가로등 본
이설 보안등 본</td><td>도로명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신 청 사 유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공 사 기 간</td><td colspan="3">. . . ~ . . .(일간)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상기와 같은 사유로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(인)

하남시장 귀하</td></tr>
</table>